

2026년도 제2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사회복지, 녹지, 해양수산) 계획 공고

2026년도 제2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을 「지방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가. 선발예정인원

시 험 명	직 급	직 렬	직 류	선 발 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계			3개	12	
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9급	사회 복지	사회복지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4
		녹지	산림자원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
		해양 수산	선박기관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3

나. 직류별 시험과목

직 급	직 렬	직 류	필기시험 과목 (제1·2차 병합시험)
9급	사 회 복 지	사 회 복 지	필수(2) 사회, 사회복지학개론
	녹 지	산 림 자 원	필수(3) 생물, 조림, 임업경영
	해 양 수 산	선 박 기 관	필수(3) 물리, 선박일반, 선박기관

2

시험방법 및 시험시간

가. 시험방법

- ①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필기시험(4지 택1형, 과목당 20문항, 100점 만점)

시 험 구 분	합격자 결정방법
경력경쟁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총득점이 높은 순

※ 구체적인 합격자 결정방법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② 서류전형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자격, 가산점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심사

- ③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전(前)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의 서류제출 기간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합니다.

※ 서류전형 결과 응시자격 요건 미충족 또는 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면접시험 응시가 불가합니다.

※ 면접 결과 우수, 미흡 판정 대상자가 있는 경우 추가면접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나. 필기시험 시간

시 험 명	직급	직렬(직류)	과목수	시험시간
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9급	사회복지(사회복지)	2과목	10:00~10:40(40분)
		녹지(산림자원)	3과목	10:00~11:00(60분)
		해양수산(선박기관)	3과목	

3

필기시험 문제출제

가. 당해 시험은 전(全)과목 자체출제로, 시험문제는 비공개합니다.

※ 시험종료 후 자체출제 문제책은 모두 회수하며, 응시자는 문제책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4

응시자격 ※ 기준일 : '26. 12. 15.(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가.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9. 1. 1. 이전 출생자)

나. 거주지요건 : 아래 1)항, 2)항 중 하나를 충족

1) 현재 거주 중인 자 : 2026년 1월 1일 이전부터 본 시험 면접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로 되어 있는 자

2) 3년 이상 주소를 둔 자 : 2026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로 되어 있는 기간이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해당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응시 가능합니다.(잔여 일수를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1개월로 환산)

※ 거주지요건의 확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인정되므로 반드시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거주지 제한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다. 자격요건(자격증면허증 등)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등
사회 복지	사회 복지	사회복지사 1급~3급
녹지	산림 자원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 업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2년)*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목재가공, 펄프종이제조)
해양 수산	선박 기관	기관사 1급~5급

* 산림자원 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산림자원 관련분야 연구 또는 근무 경력

라. 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해당하는 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서 응시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르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 응시자격과 관련하여 기준일 현재 법령의 개정이 있는 경우, 개정된 법령을 적용합니다.

마. 자격요건 설명

- 1) 자격·면허증, 거주지, 가산점 등 각종 증명서류는 원서접수 시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정해진 서류전형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면허증은 해당 면접시험 최종일(12. 15.)까지 취득 및 유효해야 합니다.

* 자격(면허)증 사본 및 발급확인서를 제출 가능해야 함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 일정

시 험 명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 험 일 정			
	기 간	방 법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 험 일	합 격 자 발 표 일
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10. 12.(월) ~ 10. 16.(금)	인터넷 접 수	필기시험	11. 11.(수)	11. 21.(토)	11. 25.(수)
			면접시험	11. 25.(수)	12. 14.(월) ~ 12. 15.(화)	12. 23.(수)

※ 서류전형 일정(제출기간: 11.25.~11.30. 예정)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며, 응시자격 요건 미충족 및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다음 단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 인성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합니다.(인성 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참고 자료로 활용)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등 시험 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누리집 「시험정보」(<https://www.jeonnam-gwangju.go.kr/contentsView.do?pageId=jngj26>), 지방자치단체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공고하며, 문자 등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방법 (온라인)

가.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접수·취소기간

- 1) 접수방법 : 지방자치단체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

※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하며, 원서 접수 시스템 관련사항은 ☎ 1522-06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접수 및 취소기간(시스템 장애 발생 시 연장될 수 있음)

시 험 명	응 시 원 서	
	접 수 기 간	취 소 기 간
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10. 12.(월) 09:00 ~ 10. 16.(금) 18:00	~ 10. 19.(월) 18:00

※ 원서접수·취소는 기간 내 24시간 가능(단, 시작일은 09:00부터, 마감일은 18:00까지)

3) 응시수수료: 5,000원

- 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신용카드결제·계좌이체·휴대전화 결제비용)이 소요됩니다.
- 원서접수 취소기간에 취소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 면제를 위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자세한 내용은 원서 접수 시 안내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1)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마감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 응시분야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접수기간 내에 취소 후 다시 접수하여야 합니다.

2)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니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파일(JPG) 규격: 3.5cm × 4.5cm 기준, 해상도 100DPI이상
- 사진은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6개월 이내 촬영)**

※ 사진과 실물의 차이가 큰 경우 시험장에서 별도의 본인확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

3) 응시원서 접수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시기 바라며, 누락·착오입력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4) 연령, 거주지 요건, 응시자격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 특전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제출 기간 내에 본인이 제출한 서류를 통해 확인합니다.

- 5)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 이후부터 출력 가능(원서접수 기간에는 출력되지 않음)하며,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해야 합니다.

7

가 산 특 전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취업지원대상자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

-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 2) 취업지원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단위(직급/직류/임용 예정기관)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선발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의사상자 등(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의사상자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

-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6조에 따라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합니다.

- 2)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단위(직급/직류/선발 예정기관)별로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선발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합니다.

※ 의사상자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4, 3255)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1)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시행 전일(11.20.)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해당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3일 이내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지방자치단체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모든 임용시험의 답안지에 가산점 표기란이 없음)

가산점 입력기간	2026. 11. 21.(토) 09:00 ~ 11. 23.(월) 18:00
-----------------	--

※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를, 의사상자는 가산비율(5% 또는 3%)과 증서번호를 입력

※ 자격종류 및 가산비율, 번호(보훈번호 등)를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가산점 미적용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2) 가산특전 대상자의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서류전형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원서접수 시에는 제출하지 않음)
- 3) 위의 ‘가’항, ‘나’항이 모두 해당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선택합니다.

8 응시자 유의사항 [필독]

- 가. 응시원서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중복지원, 거주지 제한 미확인, 자격미비자 응시, 규격 사진이 아닌 경우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나.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응시표와 실물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기재) 중 하나],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수정테이프)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다. 응시자는 응시표, 시험일시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준수 사항에 유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체출제 과목은 문제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마. 답안카드에는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표기하여야 하며, 지정된 펜을 사용하지 않거나, 예비표기를 한 경우는 해당 문항이 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 수정테이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사용 불가)

※ 수정테이프는 응시자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수정테이프만 사용 가능합니다.

바.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택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응시표에 기재된 선택과목 순서대로 채점됩니다.

사.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전자통신기기(휴대폰, 스마트워치, 스마트안경, PMP,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등을 휴대할 수 없으며, 지참한 경우에는 시험시작 전에 시험실 내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작 후 전자통신기기를 소지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시험에 있어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연령·거주지·가점·학력·경력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거짓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부정행위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 그 밖에 공무원임용을 위한 응시자격을 정지하며,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자. 필기시험에서 과락(경력경쟁은 각 과목 40점 미만 또는 총점의 평균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시험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관계법령 등에 따라서 처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필기시험 성적조회는 실제 시험에 응시한 사람에 한하여 지정된 열람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조회 가능합니다.(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시 필기시험 성적조회 열람기간 공고)

카.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임용이 되지 않습니다.

타. 최종합격자는 임용예정기관별로 합격 유효기간 내에 임용되며, 임용시기는 합격 유효기간 내의 범위에서 인사운영에 따라 늦어질 수 있습니다.

파. 자격증·학력·면허증 등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는 4년 이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진출이 제한됩니다.

9 기 타 사 항

가.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3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해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시험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누리집(홈페이지) 시험정보에 공고하며,
시험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지원과 인재
채용팀(☎061-286-337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과 관련된 모든 공고·안내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누리집(홈페이지) 시험정보, 지방자치단체인터넷원서접수
센터에 공지합니다.**